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허가조건에서 장비내역에 대해서

**Q**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허가를 내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계획하고 있고 장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비 내역에서 5톤 미만 차량 2대, 15톤 덤프 트럭 1대가 구비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15톤 덤프 트럭이 아니고 15톤 암률 트럭이어도 허가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률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의 수집·운반차량을 갖추되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포함하여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재능력이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반드시 덤프트럭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범위

**Q** 2005년 12월 29일 시행된 [건폐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5조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자는 일반 철거와 폐기물처리를 각각 분리 발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철거와 폐기물처리 공사를 각각 발주해야 하는지요. 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자의 범위에 일반 민간건설 회사와 재개발조합도 포함이 되는지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가 아닌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페콘크리트 재활용 관련

**Q** 저희 회사는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로서 이번에 폐지된 플랜트를 철거하고 신규플랜트를 건설하고자 철거

공사를 발주(2006. 1. 3 입찰공고)하였습니다. 철거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는 철거공사 업체로 하여금 이동식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토록하고 활용은 내년 신규플랜트 건설시 당현장에 성토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2005. 12. 29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파쇄작업을 폐기물처리업체등에 별도 발주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처럼 철거공사 업체로 하여금 파쇄토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A**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자(발주자)가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 이하)을 준수할 경우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05. 12. 29일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련 질의

**Q** 1.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검토 및 선정하는 발주처에서 환경부 공문 [내각 - 오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의 내용을 바탕으로 CDS - Stormwater 처리시설이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 참고로 CDS 시설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5,000개 정도 설치되어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청계천 복원사업] 및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시범설치사업 - 1 차년도] 등에 참여하여 설치, 운영한 실적이 있음.  
2.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1. 귀사에서 질의하신 내각 - 오남간 도로확포장 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중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내각 - 오남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을 변경 (CDS-Stormwater → 식생



저류형 등) 토록 한 것은 하류지역 물이용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서 미세오염물질 처리효율이 장치형 보다는 식생저류 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사항이며 CDS-Stormwater 처리시설 자체가 미세오염물질 처리를 못하여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귀사에서 설치·운영중에 있는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인 CDS-Stormwater 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정·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원칙적으로 현재 개정중에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따르되, 비점오염물질처리시설의 설치규모, 형식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 배수유역 특성, 하류지역의 물이용 상황,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온천지구지정이 가능한지

**Q** 다른이 아니고 온천이 발견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온천지구로 조성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 되어야하는데 혹 상수원보호구역안이라 지구조성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되면 무슨법으로 안되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A** 수도법상에는 온천지구조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지역주민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물 및 공작물 신축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과 농가주택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온천지구를 조성하여 목욕장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수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대상 범위 및 정책 방향

**Q**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3천kW 이상의 수력발전은 평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1. 저수지를 수반하지 않고 댐만 건설하는 경우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정부(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장력을 위하여 소수력에 대한 발전차액보상한도를 3천kW급에서 5천kW급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영향평가대상사업도 동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소수력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환경부의 정책방향 또는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통합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댐 및 저수지를 수반하는 경우 발전시설 용량이 3천k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따라서 댐 및 저수지가 수반되지 않는 발전시설은 평가대상이 아니라 댐건설이 수반된 발전시설로 3천kW 이상 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귀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로 풍력, 조력, 태양력 등).

### 지정폐기물 신고 관련

**Q**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법 제25조2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관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시험·분석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분석결과서로도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알고



# 환경관리질의응답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내용에 감사드립니다.

**A**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위한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폐수종말처리장 종합시운전시 행정절차 문의

**Q** 저희 폐수처리장은 폐수의 유입이 없다가 금번 2월초부터 폐수유입이 발생되어 종합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공사완료후 시운전하기전에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수질환경보전법제14조)"를 하고 시운기간(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폐수종말처리장도 위규정대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동개시신고를 하지않고 시운전 완료후 준공보고(수질분석데이터첨부)로 갈음되는지 답변해 주세요.(현재 전주지방환경청에 종합시운전 데이터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사업(1단계)공사 준공보고만 2004. 2. 27일자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A**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같이 설치완료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절차는 없으며,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지관리침서를 포함한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면 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관련

**Q**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또는 시설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지만의 면적은

30만제곱미터미만이나 일반상업용지를 포함할 경우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또는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바, 상기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승인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이 될 경우 '폐촉법'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 폐벽돌처리건

**Q** 저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분류에보면 폐벽돌은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데 경량벽돌은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량벽돌에 들어가는 성분에 의하여 처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지 요즘 건축물들을 보면 벽을 경량벽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고시에 보면 비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기도 하던데요. 건설폐기물처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성분분석표를 가져오라고 해서요. 제조회사에서는 가르켜주지를 않더라구요. 빠른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처리를 해야되서 그렇습니다.

**A** 건설폐기물 중 폐벽돌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가 수탁받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질오염물질예측 건

**Q** 당사는 철원자재(SS판)를 습식절단 및 습식연마를 하는 업체로 공정중에 다른 원료가 투입되지는 않고 단순히 용수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처리(절단, 연마)만 하여 폐수가 발생합니다. 수질오염물질의 예측하는 과정에서 질의 1. 철원자재의 주성분(90~95%)은 Fe이고 성분 분석표상에는 미량의 중금속(Cu, Pb, Cr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량의 중금속 성분이 현행 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검출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지요? 짧은 소견으로는 금속물질은 금속이온상으로 존재할 경우 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단 및 연마의 경우 입자가 큰 슬러지 및 SS농도는 증가하겠지만 금속성분이 물에 용해(이온화)되어 수질오염물질로 검출된다고 예측하기에는 더구나 주성분이 아닌 미량의 중금속이므로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2. 만약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Cr은 특정유해물질로 6가크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학적반응이 아닌 물리적처리(절단, 연마 등)로 6가크롬이 발생한다고 하기에는 무리한 예측이 되지 않는지요?

**A** 철원자재의 절단 또는 연마시 발생되는 폐수에는 원자재의 성분, 냉각수 등에 첨가되어 있는 물질 등에 따라 다양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생된 폐수에 대해 측정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오염물질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검사기간 1년 기한 초과)

**Q** 저희 업체는 재활용업체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소각한후 폐열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 1년에 한번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하는데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검사를 할려고하는데 1년이라는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이경우에 중간처리업체는 1개월 조업중지, 또는 2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 업체는 재활용업체(100% 소각)로서 이러한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대상이 대는지 중간처리업자와같은 재제를 받게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다이옥신 초과 및 다이옥신 측정 미이행에 대하여는 그 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오염물질 측정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질의

**Q**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중 플라스틱 성형설비인 압출기는 250hp이상 이면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비당 250hp 인지 혹은 모든 압출기의 합이 250hp인지요. 참고로 30hp 압출기를 10대 보유하여 total 300hp이나 가동률은 60% 미만입니다. 신고대상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합계로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는 가동율과는 무관하며 질문내용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별표3]규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 월간지 구독 문의

TEL : (02) 852-2291 (代)